

■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[별표 2] <개정 2024. 6. 28.>

2024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관세율을 인하하여 적용하는 물품

관세율표 번 호		품명	규격 등	세율 (%)	한계수량
호	소호				
0408		새의 알(껍질이 붙지 않은 것)과 알의 노른자위(신선한 것, 건조한 것, 물에 삶았거나 찌른 것, 성형한 것, 냉동한 것이나 그 밖의 보존처리를 한 것으로 한정하며, 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를 첨가한 것인지에 상관 없다)			
0408	1	알의 노른자위			
0408	11	건조한 것	닭[갈루스 도메스티쿠스( <i>Gallus domesticus</i> )종으로 한정한다]의 것	0	
0408	19	기타	닭[갈루스 도메스티쿠스( <i>Gallus domesticus</i> )종으로 한정한다]의 것으로 액체 또는 냉동한 상태의 것	0	5,000톤
0408	9	기타			
0408	91	건조한 것	닭[갈루스 도메스티쿠스( <i>Gallus domesticus</i> )종으로 한정한다]의 것	0	
0408	99	기타			

		1. 닭[갈루스 도메스티쿠스 ( <i>Gallus domesticus</i> )종으로 한정한다]의 것	액체 또는 냉동한 상태의 것	0	
3502		알부민(건조물 상태에서 계산한 유장단백질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100분의 80을 초과하는 둘 이상의 유장단백질의 농축물을 포함한다)·알부민산염과 그 밖의 알부민 유도체			
3502	1	알의 흰자위(egg albumin)			
3502	11	건조한 것	식품 원료용의 것	0	
3502	19	기타	식품 원료용으로 액체 또는 냉동한 상태의 것	0	
0714		매니옥(manioc)·츄뿌리·살렘(salep)·돼지감자(Jerusalem artichoke)·고구마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분이나 이눌린(inulin)을 다량 함유한 뿌리·괴경(塊莖)[얇게 썬 것이나 펠릿(pellet) 모양인지에 상관없으며 신선한 것, 냉장한 것·냉동한 것, 건조한 것으로 한정한다], 사고야자(sago)의 심(pith)			
0714	10	매니옥(manioc)[카사바(cassava)]			
		2. 건조한 것			
		가. 칩(chip)	주정용	0	53,000톤

0901		커피(볶았는지, 카페인을 제거했는지에 상관없다), 커피의 껍데기와 껍질, 커피를 함유한 커피 대용물(커피의 포함비율은 상관없다)		
0901	1	커피(볶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)		
0901	11	카페인을 제거하지 않은 것	0	수입 전량
0901	12	카페인을 제거한 것	0	
1512		해바라기씨유·잇꽃유·목화씨유와 그 분획물(정제했는지에 상관없으며 화학적으로 변성 가공한 것은 제외한다)		
1512	1	해바라기씨유·잇꽃유와 그 분획물		
1512	11	조유(粗油) 1. 해바라기씨유	0	수입 전량
1512	19	기타 1. 정제유(精製油) 가. 해바라기씨유	0	
1701		사탕수수당이나 사탕무당, 화학적으로 순수한 자당(蔗糖)(고체 상태인 것으로 한정한다)		

1701	1	조당(粗糖)[향미제(香味劑)나 착색제가 첨가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]		
1701	12	사탕무당 1. 편광도수가 98.5도 이하인 것 2. 편광도수가 98.5도를 초과하는 것	0	
1701	13	이 류의 소호주 제2호에 규정된 사탕수수당	0	수입 전량
1701	14	그 밖의 사탕수수당 1. 편광도수가 98.5도 이하인 것 2. 편광도수가 98.5도를 초과하는 것	0	
1701	9	기타		
1701	91	향미제(香味劑)나 착색제가 첨가된 것	0	50,000톤
1701	99	기타	0	
2207		변성하지 않은 에틸알코올(알코올의 용량이 전 용량의 100분의 80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), 변성 에틸알코올과 그 밖의 변성 주정(알코올의 용량은 상관없다)		

2207	10	변성하지 않은 에틸알코올(알코올의 용량이 전 용량의 100분의 80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)	0	86,000 킬로리터
2709	00	석유와 역청유(瀝靑油)(원유로 한정한다)	0	100,000,000 배럴
		1. 석유		
		가. 섭씨 15도에서 비중이 0.796 초과 0.841 이하인 것		
		나. 섭씨 15도에서 비중이 0.841 초과 0.847 이하인 것	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	
		다. 섭씨 15도에서 비중이 0.847 초과 0.855 이하인 것	1. 나프타 제조에 사용되는 원유	
		라. 섭씨 15도에서 비중이 0.855 초과 0.869 이하인 것	2. 프로판 및 부탄 제조에 사용되는 원유	
		마. 섭씨 15도에서 비중이 0.869 초과 0.885 이하인 것		
		바. 섭씨 15도에서 비중이 0.885 초과 0.899 이하인 것		
		사. 섭씨 15도에서 비중이		

		0.899 초과 0.904 이하인 것		
		아. 섭씨 15도에서 비중이 0.904 초과 0.966 이하인 것		
		자. 기타		
		2. 역청유(瀝靑油)		
2711		석유가스와 그 밖의 가스 상태의 탄화수소		
2711	1	액화한 것		
2711	11	천연가스	0	수입 전량
2711	2	가스 상태인 것		
2711	21	천연가스	0	
2711		석유가스와 그 밖의 가스 상태의 탄화수소		
2711	1	액화한 것		
2711	12	프로판	0	수입 전량
2711	13	부탄	0	
3105		광물성 비료나 화학비료(비료의 필수요소인 질소·인·칼륨 중 두 가지나 세 가지를 함유하는 것으로 한정한다), 그 밖의 비료, 이 류에 열거한 물품을 태블릿(tablet) 모양이나 이		

3105	30	<p>와 유사한 모양으로 한 것이거나 용기를 포함한 한 개의 총중량이 10킬로그램 이하로 포장한 것</p> <p>오르토인산수소 이암모늄(인산 이암모늄)</p>	0	수입 전량
------	----	--	---	-------